

#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

## 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 제외), 경기도

## ② 적용 대상 등

- (대상) 유흥시설 5종(무도장\* 포함)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\*\*, 공연장\*\*\*

\* 무도장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(볼룸댄스)를 할 수 있는 시설

\*\*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: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·음료·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

\*\*\*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공연장

- 클럽·나이트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(무도장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 및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③ 적용 기간

- 2021년 7월 12일(월) 0시 ~ 2021년 7월 25일(일) 24시

## ④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## 5. 주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**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 
공연장 집합금지 조치**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 
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### 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 
집합금지 조치

-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

### 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-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 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 제외), 경기도

## ② 적용 대상

- (대상)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

< 대상시설(35종)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▲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▲ 콜라텍·무도장 ▲ 홀덤펍·홀덤게임장 <b>* 1그룹 전체 집합금지 적용</b>
2그룹(5종)	▲ 식당·카페 ▲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(12종)	▲ 학원 등 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아·미용업 ▲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 ▲ 유원시설 ▲ 오락실·멀티방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▲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▲ PC방
기타시설(13종)	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 ▲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▲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 ▲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▲ 숙박시설 ▲ 파티룸 ▲ 도서관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전문점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·조정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③ 적용 기간

- 2021년 7월 12일(월) 0시 ~ 2021년 7월 25일(일) 24시

## ④ 방역 수칙

■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12.(월) 0시부터 7.25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- (다중이용시설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·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\*\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- (종교시설) 2021.7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\*\*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하고, 성가대,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\*\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-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0종(1그룹 시설 및 고위험 사업장 외)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‘기본방역수칙’ 중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과 아래 ‘추가적용 수칙’ 적용
- ‘콜센터’, ‘물류센터’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‘기본방역수칙’을 적용 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

<추가적용 수칙(영화관, 공연장) 및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>

### ▲ 영화관, ▲ 공연장

#### ★ 추가 적용 수칙

##### ◦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
- 정규 공연시설\* 외 공연 개최 금지\*\*

\*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

\*\*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

### ▲ 콜센터

##### ◦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

- 전체 근로자\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
\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

##### ◦ (이용자)

- 방역수칙 준수
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li>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</li> <li>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-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</li> <li>-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</li> <li>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 작성)</li> <li>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li> </ul>	
<p><b>▲ 물류센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체 근로자*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</li> <li>* 협력업체 근로자, 파견·용역근로자, 특수 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근로자 (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) 포함</li> <li>-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(공간 당 최소 1개 이상)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</li> <li>-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</li> <li>-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</li> <li>- 일 1회 이상 소독(소독대장 작성)</li> <li>* 하역, 운반장비, 공용물품(작업복, 작업화 등), 출입문,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</li> <li>-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</li> <li>-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(대장작성)</li> <li>-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</li> <li>*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(병가, 연가휴가 등) 활용하도록 권장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이용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역수칙 준수</li> <li>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</li> </ul> </li> </ul>

## 5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, 제80조제7호 및 같은 조 제2호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※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공포(7.7.)됨에 따라 시설별 (기본)방역수칙 중 ‘운영시간 제한’ 위반의 경우,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(집합제한 조치 위반)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·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**제80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·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 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·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## ⑥ 추진내용 및 절차

① (중대본) 다중이용시설 등 1~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

② (지자체)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③ 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, 집합제한 조치(운영시간 제한) 위반 시 고발 조치(감염병예방법 제80조)



④ 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\*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**방역지침(운영시간 제한 등)**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
\*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**운영중단,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**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### 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-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,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**기본방역수칙과 준수 의무사항(콜센터, 물류센터)을 모두 준수**

### 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- ☞ **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시 과태료 부과 → 경고·시설 운영 중단·폐쇄명령 등 조치**

-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  - ※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-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, 위반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  - 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-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## ① 적용 지역

-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 제외), 경기도

## ② 적용 대상 등

■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2021.7.12.(월) 0시부터 7.25.(일) 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

- (사적 모임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  -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- (직계가족) 2021.6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\*\*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

\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\*\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### ① 5명(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)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명(3명)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- (인원산정) '5명(3명)'의 범위'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을 제외

## ※ 적용 예외

###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\* 등이 모이는 경우

#### ■ 동거가족 모임

\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#### ■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#### ■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### ②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

\*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(예: 풋살 최대 15명)

## ②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
-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

### <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▲ (모임·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‘기본방역수칙’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(추가)수칙 적용

-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

\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※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

### ③ 적용 기간

- 2021년 7월 12일(월) 0시 ~ 2021년 7월 25일(일) 24시

### ④ 법적 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, 같은 조 제2의2호, 제2의4호 및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**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**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 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**제80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**제83조(과태료)**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## 5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①(중대본)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)

②(지자체)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③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
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또는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\* 행정조치  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\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
④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\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 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## 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### 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</li><li>① 5(3)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</li><li>② 시설 내 이용객이 5(3)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(3)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</li><li>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(3)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</li></ul> <p>※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(7.12. 0시~7.25. 24시까지 미적용) ※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▶ 5(3)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</li></ul></li><li>▶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(3)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</li></ul>

## 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 여부 현장점검 →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
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→ 벌칙 부과 등 조치

###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### ② 해당 모임·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###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\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## ⑥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

### ① (중대본)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 조치
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)



### ② (지자체) 관내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조치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

### ③ 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,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#### 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

-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
#### 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→ 이행여부 수시 현장점검 →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

- 관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준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안내
-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(벌금300만원 이하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